



다. 시설 및 인력기준

1) 시설기준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주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 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의 범위 내에서 증원 할 수 있음

〈시설 및 정원〉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를 정원으로 함
- '전용공간'이란 9시~18시 동안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제공기관 내의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 (예: 3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시간대별(오전, 오후 등)로 8인이 이용 가능)
-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20호]' 제출 필요
-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 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5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2) 인력 기준

- 주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주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 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4. 주간활동 종사자 채용 및 배치" 참조)을 충족해야 함



구분	주요업무
시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전체적인 사업 총괄
전담 관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주간활동 제공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대체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기타 주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 전담 관리인력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을 인정

<예외적으로 제공기관 겸직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구분	겸직 여부
10인 이하의 소규모 제공기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10인 이하의 농어촌 제공기관	시설장과 전담인력 겸직 여부	다른 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가능
	전담인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시설장이 전담인력으로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시설장과 제공인력 겸직 여부	불가

* 다른 기관의 장이란,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의 기관장(시설장)을 말함

- 이용자 수가 적은 소규모 제공기관 또는 농어촌 지역의 제공기관에 대한 겸직 인정기준
 -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시설장이 제공인력과 겸직은 불가)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장은 다른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라도 전담 관리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농어촌 지역은 이용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공기관의 경우 전담 관리인력(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함)이 주간활동 제공인력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함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종사자 겸직 인정기준
 - * 제공기관의 소재지(주소) 및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에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 시설 규모, 겸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책(시설장, 전담인력, 제공인력) 관계 없이 최대 3개까지 겸직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위 표는 준수되어야 함
 - 겸직 시, 사업별로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 및 상근의무 준수해야 함
- 예시 업무의 지장이 없고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전담(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전담(제공)인력의 겸직이 가능(최대 3개까지만 겸직 가능)
- 예시 주간활동 이용자 8인, 방과후활동 이용자 3인인 소규모 기관에서 한 사람이 주간활동 시설장, 방과후활동 시설장, 주간활동 전담인력, 방과후활동 전담인력을 모두 겸직할 수 없음(최대 3개까지만 겸직 가능)
- 주간활동 근무자가 병가·휴가 등으로 부재할 시 배치되는 대체인력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지정 시 시·군·구에 제출하였던 종사자 활용계획에 기준하여 운영하되,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군·구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

[별첨 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추는 것. 이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